

가입자명 :

무배당 교보개인형 자산관리 퇴직연금(개인형)

보험 약관

2025.06.30 개정본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무배당 교보개인형 자산관리 퇴직연금(개인형) 보험 약관

2023.01.28 개정본

제1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가입자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형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개인형)(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하며, 이 계약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 다. 자영업자
 - 라.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마.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 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 차.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하며, 연금지급기준일부터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연단위 등)만큼 지난 날에 최초 연금이 지급됩니다.
 - “잔치정용융방법”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 연금지축계좌 이체로 적립된 금액을 말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라 함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이라 함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4조 (수익자)

이 계약의 수익자는 가입자라 합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사망한 때에는 가입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5조 (부담금의 납입)

- 가입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자산을 납입합니다.
- 가입자는 퇴직재산 외에 별도로 자기의 부담으로 금전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금액의 합은 관련 법규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입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금지축계좌에서 이체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 실적배당형의 경우 납입된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다음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펀드에 투입되며, 투입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금리연동형 적용이율로 적립합니다.

제6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이 변경·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제8조 제2항에 따른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따른 급여 및 해지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따른 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해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 확인(이하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 회사는 제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자산관리기관의 수행업무)

- 회사는 자산관리기관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부담금의 수령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 급여 등의 지급
 - 기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입자 또는 수익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적립금의 운용)

-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 회사는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 회사는 가입자가 운용하는 적립금에 대해 금리연동형, 이율변동형(3년), 이율보존형, 이율보존형 3년형(디폴트 옵션 전용) 및 실적배당형 펀드 유형별로 특별계정을 설정합니다.

제9조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가입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가입자에게 교부합니다.

제10조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가입자가 청약한 경우 가입자에게 이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분<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전달하고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가입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의 중요내용에 대해 가입자가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합니다)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에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회사의 책임개시 및 종료)

회사는 계약의 청약에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3조 (자산관리수수료)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 무배당 교보개인형 자산관리 퇴직연금(개인형) 부속협정서(이하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4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5조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에게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1항의 경우 가입자가 회사에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 회사가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불구하고 가입자의 청구가 지연되어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급전으로 지급합니다.
-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른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등 제세금 징수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규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중도해지)

-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교보자산관리 퇴직연금 연금전환특약 전환 및 교보자산관리 퇴직연금 신탁계약 연금 지급을 위해 해지하는 경우
 -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해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 법 제20조 제7항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이전받은 이월보존형 및 이월변동형(3년)상품의 최초 중도해지이월이 적용되는 기간내 해지하는 경우
 - 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 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취소되어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이 계약이 제4항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되었을 경우, 가입자의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적립금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18조 (계약이전)

-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약관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제3항의 지급기일 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에 제5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4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제19조는 금리연동형에 관한 사항으로 금리연동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19조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의 적용)

- 금리연동형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의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 제1항의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금리연동형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해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기준이율을 산출하고, 기준이율에 장래 운용수익률과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금리연동형 기준이율]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직전 6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율을 말하며,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고채수익률(3년), 회사채수익률(무보증, AA-, 3년), 통화안정증권수익률(1년)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 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 2 + 지표금리 × 1) / 3
[금리연동형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이 0.5%인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연복리 1.0%)로 적립됩니다.

제20조~제21조는 이월변동형(3년)에 관한 사항으로 이월변동형(3년)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0조 (이월변동형(3년) 적용이율의 적용)

- 이월변동형(3년) 적용이율은 각 부담금 납입건별로 부담금 납입일부터 경과기간별로 회사가 정한 이월변동형(3년)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1. 납입 1차년 적용이율

[이월변동형(3년) 납입 1차년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해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월변동형(3년)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월변동형(3년)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이월변동형(3년) 납입 1차년 기준이율]

회사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지표금리(%) = $0.8 \times A1 + 0.2 \times A2$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A) 수익률의 평균값

2. 납입 2차년 적용이율

[이월변동형(3년) 납입 2차년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해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이월변동형(3년)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매월 1일 기준이율을 산출하고, 기준이율에 장래 운용수익률과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이월변동형(3년)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월변동형(3년)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이월변동형(3년) 납입 2차년 기준이율]

회사의 이월변동형(3년)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직전 6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율을 말하며,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 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 1 + 지표금리 × 2) / 3
· 지표금리(%) = $0.8 \times A1 + 0.2 \times A2$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A) 수익률의 평균값

3. 납입 3차년 이후 적용이율

[이월변동형(3년) 납입 3차년 이후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해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이월변동형(3년)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매월 1일 기준이율을 산출하고, 기준이율에 장래 운용수익률과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이월변동형(3년)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월변동형(3년)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이월변동형(3년) 납입 3차년 이후 기준이율]

회사의 이월변동형(3년)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직전 12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율을 말하며,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 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 1 + 지표금리 × 2) / 3
· 지표금리(%) = $0.8 \times A1 + 0.2 \times A2$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A) 수익률의 평균값

- 제1항의 적용이율은 각 부담금 납입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각 부담금 납입건별로 납입시점의 ‘납입 1차년 적용이율’을 부담금 납입일부터 1년동안 확정 적용
- ‘납입 2차년 적용이율’을 부담금 납입일 이후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확정 적용
- ‘납입 3차년 이후 적용이율’을 부담금 납입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

- 이월변동형(3년)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제21조 (이월변동형(3년) 상품의 해지환급금)

- 이월변동형(3년) 상품의 각 부담금 납입건별로 부담금 납입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부담금 납입일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부담금 납입일부터 경과기간별로 「해당 연차별 이월변동형(3년) 적용이율 × 50%」와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 중 높은 이율로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 회사와 운용관리기관이 동일한 경우 각 부담금 납입건별로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7영업일 이전에 상품을 변경하거나 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
- 각 부담금 납입건별로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각 부담금 납입건별로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3영업일 이전에 해지하거나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제22조 ~ 제24조는 이월보존형에 관한 사항으로 이월보존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2조 (이월보존형의 단위보험)

- 회사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합니다. 이 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월보증기간”이라 합니다.
-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가입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월보존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1년, 2년, 3년, 5년)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월보존형 적용이율로 이월보증기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가입자는 이월보증기간의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가입자가 이월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 상환합니다.

제23조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적용)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 제1항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지방채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지표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0.3 \times A1 + 0.7 \times A2$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1년만기, 무보증, AAA) 수익률의 평균값

※ 2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0.7 \times A1 + 0.3 \times A2$

A1 : 국고채(2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2년만기, 무보증, AAA) 수익률의 평균값

※ 3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0.7 \times A1 + 0.3 \times A2$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A) 수익률의 평균값

※ 5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0.8 \times A1 + 0.2 \times A2$

A1 :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지방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제24조 (이율보증형 상품의 해지환급금)

- 이율보증형 단위보험이 해당 단위보험의 설정일부터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이율보증형 적용이율×50%」로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 회사와 운용관리기관이 동일한 경우 만기일 ±7영업일 이내에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만기일 ±3영업일 이내에 해지하거나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제25조 ~ 제25조의3은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5조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의 단위보험)

- 회사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합니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가입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가입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일 상환합니다.
-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위보험이 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실적배당형 운용방법이 포함된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경우, 회사는 만기가 도래한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을 단위보험 만기일에 자동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만기가 도래한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의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로 합니다.

제25조의2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의 적용)

-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 제1항의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지표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 지표금리(%) = $0.65 \times A1 + 0.35 \times A2$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A) 수익률의 평균값

제25조의3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상품의 해지환급금)

-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단위보험이 해당 단위보험의 설정일부터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80%」로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 회사와 운용관리기관이 동일한 경우 만기일 ±7영업일 이내에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만기일 ±3영업일 이내에 해지하거나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제26조 ~ 제33조는 실적배당형에 관한 사항으로 실적배당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6조 (실적배당형 용어의 정의)

-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운용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 “운용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투자일임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기 위해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사무관리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 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제27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

-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채권형

채권(자산유동화증권 등 포함)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등에 7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가.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NAV)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합니다.

나.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기업어음, 후순위채권 등에 대해서는 펀드 순자산(NAV)의 30% 미만인 되도록 운용합니다.

다. 외국 채권에 대해서는 펀드 순자산(NAV)의 50% 미만인 되도록 운용합니다.

(2) 채권혼합형

주식(코스닥, 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40% 이내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가.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NAV)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합니다.

나.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기업어음, 후순위채권 등에 대해서는 펀드 순자산(NAV)의 30% 미만인 되도록 운용합니다.

다. 외국 채권에 대해서는 펀드 순자산(NAV)의 50% 미만인 되도록 운용합니다.

(3) 인덱스혼합형

주식(코스닥, 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순자산의 40% 이내를 투자하여 KOSPI, KOSPI 200 지수 등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 포함),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가.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NAV)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합니다.

나.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기업어음, 후순위채권 등에 대해서는 펀드 순자산(NAV)의 30% 미만인 되도록 운용합니다.

다. 외국 채권에 대해서는 펀드 순자산(NAV)의 50% 미만인 되도록 운용합니다.

(4) 교보 퇴직연금Best컬렉션(주식형)

주식(코스닥, 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주식과 채권 및 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가. 전체 주식관련자산(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자산 포함)에 대한 투자 비중은 펀드 순자산(NAV)의 60% 이상으로 하며, 채권의 투자적격 여부는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국내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와 국내의 국가 및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위주로 투자합니다.

(5) 교보 글로벌 퇴직연금Best컬렉션(주식형)

주식(코스닥, 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투

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주식과 채권 및 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가. 전체 주식관련자산(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자산 포함)에 대한 투자 비중은 펀드 순자산(NAV)의 60% 이상으로 하며, 채권의 투자적격 여부는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해외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와 국내 및 해외의 국가 및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위주로 투자합니다.

(6) 교보 퇴직연금Best컬렉션(채권혼합형)

주식(코스닥, 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주식과 채권 및 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가. 전체 주식관련자산(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자산 포함)에 대한 투자 비중은 펀드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채권의 투자적격 여부는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국내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와 국내의 국가 및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위주로 투자합니다.

(7) 교보 글로벌 퇴직연금Best컬렉션(채권혼합형)

주식(코스닥, 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주식과 채권 및 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가. 전체 주식관련자산(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자산 포함)에 대한 투자 비중은 펀드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채권의 투자적격 여부는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해외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와 국내 및 해외의 국가 및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위주로 투자합니다.

(8) 교보 안정자산 Focus 펀드(채권혼합형)

원리금보장형 상품, 주식(코스닥, 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주식과 채권 및 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가. 전체 주식관련자산(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자산 포함)에 대한 투자비중은 펀드 순자산(NAV)의 30% 이하로 하며, 채권의 투자적격여부는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국내 및 해외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와 국내 및 해외의 국가 및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위주로 투자하며, 주로 인컴펀드, 자산배분펀드 등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 위주로 투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정합니다.

제28조 (펀드의 선택 및 변경)

① 가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한 제27조의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②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부담금은 제1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③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에 서면 또는 운용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이버 창구로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도 가입자가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됩니다.

④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제3항에 따른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변경합니다.

다만, 교보 글로벌 퇴직연금Best컬렉션(주식형), 교보 글로벌 퇴직연금Best컬렉션(채권혼합형), 교보 안정자산 Focus 펀드(채권혼합형)의 경우 “변경요구일+9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변경합니다.

⑤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적립금의 매각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제4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펀드가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변경합니다.

다만, 교보 글로벌 퇴직연금Best컬렉션(주식형), 교보 글로벌 퇴직연금Best컬렉션(채권혼합형), 교보 안정자산 Focus 펀드(채권혼합형)의 경우 펀드가 처분되는 날부터 9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변경합니다.

⑥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가입자의 펀드 변경요구는 펀드 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5영업일 이내(다만, 교보 글로벌 퇴직연금Best컬렉션(주식형), 교보 글로벌 퇴직연금Best컬렉션(채권혼합형), 교보 안정자산 Focus 펀드(채권혼합형)의 경우는 9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29조 (가입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펀드자동재배분을 지정할 때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됩니다.

②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펀드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배분됩니다. 이때, 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③ 가입자는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평가 및 운용)

① 실적배당형 펀드는 제27조에서 정한 펀드유형별로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운용실적이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시가법에 의해 평가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특별계정별로 귀속됩니다.

③ 실적배당형 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며,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및 운용합니다.

④ 회사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매일 제32조의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⑤ 가입자는 제28조에 따라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나, 각 펀드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하는 시점의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때,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하고,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를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text{좌당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 총 좌수}}$$

제32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

① 회사는 실적배당형 펀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1. 운영보수

펀드 종류별 운영보수는 아래 표의 비용으로 합니다.

구분	비용
채권형	0.265% (매일 0.000726027%)
채권혼합형	0.480% (매일 0.001315068%)
인덱스혼합형	0.415% (매일 0.001136986%)
교보 퇴직연금Best컬렉션(주식형)	0.500% (매일 0.001369863%)
교보 글로벌 퇴직연금Best컬렉션(주식형)	
교보 퇴직연금Best컬렉션(채권혼합형)	
교보 글로벌 퇴직연금Best컬렉션(채권혼합형)	
교보 안정자산 Focus 펀드(채권혼합형)	

2. 투자일임보수

펀드 종류별 투자일임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구분	비용
채권형	0.090% (매일 0.000246575%)
채권혼합형	0.175% (매일 0.000479452%)
인덱스혼합형	0.140% (매일 0.000383562%)
교보 퇴직연금Best컬렉션(주식형)	0.130% (매일 0.000356164%)
교보 글로벌 퇴직연금Best컬렉션(주식형)	
교보 퇴직연금Best컬렉션(채권혼합형)	
교보 글로벌 퇴직연금Best컬렉션(채권혼합형)	
교보 안정자산 Focus 펀드(채권혼합형)	

3. 수탁보수

펀드 종류별 수탁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구분	비용
채권형	0.0125% (매일 0.000034247%)
채권혼합형	
인덱스혼합형	
교보 퇴직연금Best컬렉션(주식형)	
교보 글로벌 퇴직연금Best컬렉션(주식형)	0.0125% (매일 0.000034247%)
교보 퇴직연금Best컬렉션(채권혼합형)	
교보 글로벌 퇴직연금Best컬렉션(채권혼합형)	
교보 안정자산 Focus 펀드(채권혼합형)	

4. 사무관리보수

펀드 종류별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구분	비용
채권형	0.0175% (매일 0.000047945%)
채권혼합형	
인덱스혼합형	
교보 퇴직연금Best 컬렉션(주식형)	
교보 글로벌퇴직연금Best 컬렉션(주식형)	
교보 퇴직연금Best 컬렉션(채권혼합형)	0.0175% (매일 0.000047945%)
교보 글로벌 퇴직연금Best 컬렉션(채권혼합형)	
교보 안정자산 Focus 펀드 (채권혼합형)	

- 제1호에서 제4호의 비용(매일의 비용)은 1년을 365일로 계산한 것으로 1년이 366일인 경우 해당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 특별계정 운용보수 이외에도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운용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 신탁보수, 기타비용 등)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비용을 포함하여,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매매수수료 등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3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50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펀드의 순자산 가치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기타 제1호에서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해 가입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제28조에 따른 펀드의 선택 및 변경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통보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펀드변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가입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통지합니다.

제34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

급여 등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5조 (선관주의 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산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36조 (면책)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서명,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해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사무처리

-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관련 법규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수행을 거부한 경우
-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 기타 제1호에서 제7호에 준하는 경우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7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가입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인감인)

- 가입자는 가입자의 인감을 확인하여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중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0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41조 (분쟁의 조정)

이 약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약관의 변경 등)

-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액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고액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규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3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이 약관의 조항해석에 관해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관련법규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45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에서 제공하는 금리연동형, 이율변동형(3년), 이율보증형 및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다만, 실적배당형을 선택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사전지정운용제도는 2023년 1월 28일 이후 최초부담금을 납입한 계약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전 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3년 4월 24일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 2023년 1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8월 8일 이전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 해당 상품을 유지할 때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 2014년 8월 9일부터 2015년 3월 31일 이전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 해당 상품을 유지할 때 최저보증이율은 금리연동형 상품 가입 후 경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복리 2.0%,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복리 1.5%,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 이전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 해당 상품을 유지할 때 최저보증이율은 금리연동형 상품 가입 후 경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복리 2.0%,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복리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31일 이전에 이율변동형(3년) 상품에 가입한 경우 해당 상품을 유지할 때 최저보증이율은 이율변동형(3년) 상품 가입 후 경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복리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8월 9일 이전에 이율보증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 해당 상품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합니다.

제3조 (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2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됩니다.
- 제1호는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한 경우라면 선택한 이후부터 자동재예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지) 무배당 교보개인형 자산관리 퇴직연금(개인형) 부속협정서

무배당 교보자산관리 퇴직연금 연금전환 특약

2025.06.30 개정본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과 관련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이 특약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종신까지,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는 계약일부터 확정기간연금 지급 최종일까지입니다.
 - 나. 매년 계약해당일 : 계약일로부터 1년씩 지난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생존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는 생존연금지급개시일부터 확정기간연금 지급 최종일까지를 말합니다.

제2관 급여의 지급

제3조 (급여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생존연금(별표1) "생존연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4조 (급여의 청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급여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 (급여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4조(급여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3조(급여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주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2) "급여를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때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한 후 주계약에서의 가입자의 청약(講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전환신청 당시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 약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중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3조(급여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연금지급개시일 전에 효력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13조(해지환급금)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제4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원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가입자로 하며, 이 특약의 계약자로 합니다.

제9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연금신청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이
 2.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피보험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개시 이후 연금지급형태 변경은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및 확정기간연금형과 상속연금형간의 연금지급형태 변경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금지급개시 나이는 연금지급형태 변경 전 연금지급 개시나이를 따르며 연금지급형태 변경일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재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연금지급개시 이후 연금지급형태 변경일은 연금지급형태 변경 신청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단위 계약해당일로 하며, 연단위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연금지급형태 변경일로 합니다.
- ⑤ 제3항의 연금지급개시 이후 연금지급형태 변경은 연금지급개시 이후 연금지급형태 변경이 불가한 기존 계약도 기존 계약의 연금전환신청 당시의 연금지급형태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출방법서의 '이율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기존 계약의 연금전환신청 당시의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사항을 따릅니다.

제4관 부담금의 납입

제10조 (부담금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부담금은 주계약의 가입자가 받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 "피보험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부터 보장개시일이 시작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연금지급개시일은 청약 후 연금지급개시나이(피보험자 나이 만55세부터 80세) 중 피보험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개시나이로 하며, 계약해당일은 부담금을 납입한 날로 합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1조 (피보험자의 임의해지)

- ① 피보험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지환급금)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 확인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합니다.

제12조 (적용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특약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퇴직연금 관리동행 II 적용이율(이하 "적용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적용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특약의 특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하여 결정합니다.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부담금을 적립해 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기준이율]

이 특약의 특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직전 6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이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율을 말하며,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고채수익률(5년), 회사채수익률(무보증, AA-, 3년), 통화안정증권수익률(1년)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 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 2 + 지표금리 × 1) / 3

- ③ 제1항의 적용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일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된 적용이율이 0.5%인 경우 적립금은 공시된 적용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연복리 1.0%)로 적립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적용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3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적용이율은 제12조(적용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급여를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4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15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6조 (자산관리수수료)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자산관리수수료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대하여는 매년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0.17%를 적용하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대하여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매년 연금연액의 1.2%, 확정기간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우 매년 연금연액의 0.8%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별표 1)

생존연금 지급기준표

[생존연금]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내용
종신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정액형 (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 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 보증) · 집중형 10년(10회)보증 (1형, 2형) · 집중형 30년(30회)보증 (1형, 2형, 3형)
확정기간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확정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나누어 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
상속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다만,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적립금 지급)

(주)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금이란 연금지급개시나이 이전에 발생한 주계약의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 등의 적립금을 말합니다.
- 생존연금의 계산은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적용이율」이 변경되면 생존 연금도 변경됩니다.
- 종신연금형의 정액형 및 확정기간연금형에서 이 특약의 적용이율이 특약을 체결할 때의 적용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특약 체결이후의 적용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다만, 특약건별로 적용되는 적용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집중형(10년(10회)보증) 1형은 집중연금 개시시점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인 연금지급형태를 말하며 집중형(10년(10회)보증) 2형은 집중연금 개시시점이 연금지급개시 후 6차년 시점인 연금지급형태를 말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집중형(30년(30회)보증) 1형은 집중연금 개시시점이 연금지급개시 후 11차년 시점인 연금지급형태를, 집중형(30년(30회)보증) 2형은 집중연금 개시시점이 연금지급개시 후 16차년 시점인 연금지급형태를 말하며 집중형(30년(30회)보증) 3형은 집중연금 개시시점이 연금지급개시 후 21차년 시점인 연금지급형태를 말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집중형(10년(10회)보증)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용이율과 연금지급개시 이후의 적용이율이 동일할 경우 집중연금 개시시점부터 5년간 다른 기간의 연금액 2배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지급되며 피보험자는 연금지급개시시점 이전에 [연금지급개시시점, 연금지급개시 후 6차년 시점] 중 집중연금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집중형(30년(30회)보증)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용이율과 연금지급개시 이후의 적용이율이 동일할 경우 집중연금 개시시점부터 1형의 경우 20년(2형은 15년, 3형은 10년)간 다른 기간의 연금액 1.5배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지급되며 피보험자는 연금지급개시시점 이전에 [1형은 연금지급개시 후 11차년 시점, 2형은 연금지급개시 후 16차년 시점, 3형은 연금지급개시 후 21차년 시점] 중 집중연금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집중형(10년(10회)보증)은 연금지급개시 이후의 적용이율이 변동될 경우 집중연금 개시시점 이후 5년동안의 연금액이 다른 기간의 연금액 2배에 해당하는 연금액보다 감소(증가)할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집중형(30년(30회)보증)은 연금지급개시 이후의 적용이율이 변동될 경우 집중연금 개시시점 이후 1형의 경우 20년(2형은 15년, 3형은 10년)동안의 연금액이 다른 기간의 연금액 1.5배에 해당하는 연금액보다 감소(증가)할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은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 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다만, 100세보증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은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1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로 하며,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확정기간연금형은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잔여 연금지급

기간 동안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다만, 100세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은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1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로 하며,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 또는 100세)동안 연금지급을 보증하며,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이 보험의 일시금 수령 신청 당시 적용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100세 보증은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또는 100세)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이 보험의 일시금 수령 신청 당시 적용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의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동안의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액은 “연금액에 부과되는 수수료” 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나눈 연금을 지급일까지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용이율로 해당기간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적용이율이 변경되면 나누어 지급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별표 2)

급여를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5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 관련)

1. 생존연금 (제3조)

기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적용이율 보험기간 만기 이후 1년 이내 : 적용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2. 해지환급금 (제13조)

기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적용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생존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적용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지급이자의 계산은 일복리 일자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급여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해지통지를 송달받은 날로 봅니다.